제24-1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4년도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▢ 회의일시 : 2024. 3. 15.(금) 14:00

▢ 회의장소 :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406호

▢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
4건	3건	-	1건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-	-	-	-	-	2건	2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2024. 3. 15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정동희
위 원	한국전력거래소	심현보
	산업통상자원부	김남혁
	단국대학교	조홍종
	건국대학교	노재형
	법무법인 광장	조영재 (불 참)
	한국전력공사	오흥복 (대리참석)
	한국중부발전	김광일
	포스코인터내셔널	김권종
간 사	한국전력거래소	옥기열

김한솔/20240326105815

1132400179171141835 1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육지 플러스DR 제도도입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1-1호
개최일시	2024년 3월 15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(등록 기준)** 한전 지역본부 기준 13개의 지역별 자원을 구성하여 1년 단위로 등록함 □ **(운영 기준)** 육지 플러스DR 시장 개설 시 사업자별 낙찰량에 따라 시간대별 수요를 증대함 □ **(정산 기준)** 이행률(40% 이상)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함 ㅇ 증대량(계획량의 120%까지 인정) × Min(이행률, 1.0) × 정산단가 □ **(정산 단가)** 50원/kWh ㅇ 부하이전을 통한 판매사업자의 전력구입비 절감액* * 부하이전 전 시간대 평균SMP - 부하이전 후 시간대 평균SMP □ **(정산금 상한)** 육지 플러스DR의 정산금은 반기별 8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□ **(제도의 운영)** '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, 그 이전에 육지 계통에 재생e 입찰제도 또는 신보조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운영 규모, 정산 방식 등을 재검토함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ㅇ **참석위원 대다수가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 – 다만, 일부 위원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현 규칙(안)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. 플러스DR을 계통 운영에 대한 보조 서비스의 일종으로 본다면, 다른 대안(출력제어, 음(−)의 가격 등)과 경쟁하여 가장 저렴한 보조서비스 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3월 15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0326105815

1132400179171141835 1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RPS 고시 개정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 기능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1-2호
개최일시	2024년 3월 15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□ 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(이하 "RPS 고시") 개정

○ 국가 REC 발급·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무(거래관련 사항)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통합

< RPS 고시 개정('23.11.10) >

개정 전	개정 후
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④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,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.	**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** ④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한다. <삭 제>
<신 설> ·	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·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, 발급·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른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화의 판단 기준, 거래가격과 거래 물량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.

□ **비용평가위원회의 기능에서 국가 REC 거래관련 사항을 삭제**

○ 국가 REC 거래관련 사항이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비용평가위원회 검토 및 조정사항에서 국가 REC 거래관련 사항을 삭제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3월 15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

김한솔/20240326105815

1132400179171141835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발전소 소내소비전력 사용원칙 명확화 및 준수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1-3호
개최일시	2024년 3월 15일 14:00
제 안 자	한국전력공사
제안내용	**1 '소내소비전력' 정의 및 사용원칙 신설** ○ (정의) 발전소 운영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 ○ (원칙) 계통병입 이후에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해야 함 **2 '소내소비전력' 계량데이터 점검 및 예외 적용** ○ (거래소 점검) 소내소비전력 우선사용 원칙 위반 여부를 필요시 점검함 ○ (예외 적용) 주요 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계통병입 이후에도 발전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(수전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), 발전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**3 시장감시를 위한 근거기준 마련** ○ 발전사가 소내소비전력 사용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전력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시장감시 대상으로 함 **< (한전) 본 위원회 당시 수정 제안 >** ▪ **1과 관련하여 정의 및 사용원칙은 그대로 개정을 제안**하되, 계량데이터 점검 및 예외적용(2)과 시장감시 근거기준 마련(3)에 대해서는 제안을 철회하고, 추후 W/G 운영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재제출하고자 함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심의보류 (조건부)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하는데 동의함** – (다수 의견) 소내소비전력에 대한 정의는 규칙상 명문화 가능하나, 개정안에서는 정의와 원칙이 혼재되어 있어 보완 필요 · 다만 금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전면 심의보류하고, 추후 W/G 운영 결과에 따라 상정되는 규칙개정안을 심의·의결함 – (W/G 운영*) 거래소–한전–발전사–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W/G 구성·운영하도록 결정 * (제24-1차 실무협 결과) 전력거래소, 회원사 등이 참여하는 W/G 구성과 같은 후속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원안 상정함 · 차기 규칙개정위원회에 W/G 구성·운영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함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3월 15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

김한솔/20240310110313

0064400179171007238S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석탄발전기 연간 최대기동횟수 기술특성 신설(안)

제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1-4호
개최일시	2024년 3월 15일 14:00
제 안 자	동서발전 外 7개사
제안내용	□ **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내 "연간 최대기동횟수" 신설** ○ 발전사가 제출하는 기술적 특성자료에 **"연간 최대기동횟수" 추가** - 세부 기술특성값은 추후 계통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예정 ○ **연간 기동횟수는 신고된 기술특성값 이내로 제한** □ **[별표4 입찰운영 절차] 입찰서의 내용 중 "제약사유" 추가** ○ 제약코드 세분화로 제약운전 사유를 명확히 함 - (석탄) ①기동횟수 제한, ②페어발전기 제약, ③석탄발전단지 필수 운전제약 - (원전) ④원전 안전운영 관련 제약 - (열병합) ⑤열공급 중 AGC **[제약사유별 상세 설명]** ① 기동횟수 제한 : 연간 기동횟수 제한으로 추가 기동·정지가 불가한 제약 ② 페어발전기 제약 : 공용설비 사용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동시 계통 연결 불가 및 동시 정지 예외 제약 ③ 석탄발전단지 필수 운전제약 : 석탄발전단지 내 최소 운전 발전기 수를 유지하기 위한 제약 ④ 원전 안전운영 관련 제약 : 노심연소율, 연료손상, 설비고장 등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약 ⑤ 열공급 중 AGC : 열공급 중 AGC 운전을 위한 제약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 – (후속 조치) ①계통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간 최대기동횟수 세부 값 설정 및 ②운영 기준에 대해 규칙개정안 제출 예정 – 다만, 일부 위원이 석탄뿐 아니라 LNG 복합도 잦은 기동·정지는 설비 피로도 증가, O/H 주기 단축 및 수선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제시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3월 15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0326105815

1132400179171141835 1

【붙임 2】

보고사항 결과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**(제1호)**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변경	○ 원안 접수
▪ **(제2호)** 제24-2차(긴급1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	○ 원안 접수

김한솔/20240326105815

1132400179171141835 1